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63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청구원인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취득 이후 'A학사' 제4관(제1부동산), 제5관(제2부동산)으로 운영되었다.

	과세대상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취득세 등(원)
1	[redacted]구 B 토지 317㎡, 건물 998.68㎡	3,413,600,000	2017. 3. 3.	157,025,600
2	[redacted]구 C 토지 331㎡, 건물 750.33㎡	2,526,730,000	2017. 3. 31.	116,229,580

나.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4. 27.까지 서울특별시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숙학원으로 직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추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임차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하였을 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원고의 지점이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2) 구체적 판단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D를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상주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지점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6. 11.경부터 이미 기숙학원에 대한 광고를 하였고, 제2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기숙학원 학원생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학사'와 'E'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A학사'라는 기숙학원에 연동된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구분	주소	비고
1~2관	서울 [redacted]구 F 빌딩4-6층(본점·학원)	임차
3관	서울 [redacted]구 G (학원 및 수업전용관)	임차
4관	서울 [redacted]구 B (남자기숙사)	이 사건 부동산
5관	서울 [redacted]구 C (여자기숙사,학원)	

다)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사 직영' 기숙학원으로 소개되어 있고, 원고의 조직도에도 기숙학원 담당 사업부서인 'A학사 사업부'가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기숙사의 입소를 위해서는 학원 원장과의 면접이 필요하고, 입실을 위한 상담은 위 A학사 1관(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며, 기숙사 이용료도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다.

라)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A 기숙학사 시간표'에 의하면 사감이 아침 점호와 저녁 점호를 실시하고, 저녁 의무자습(19~22시 30분 또는 22~23시)을 통제하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이용료를 할인해 주고 총무를 고용하여 총무로 하여금 아침, 저녁 점호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총무로 선임되는 학생들이 유동적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4, 5관)의 업무를 자신이 다 담당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하거나 '아침 7시에 깨우는 일을 자신이 하였고, 학생들이 저녁 10시까지 들어와야 하며 들어오지 않으면 이를 원고의 직원 중 자신의 담당실장인 H에게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D는 독립적인 고시원 운영자가 아니라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A학사의 '사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D는 2011. 11. 15.부터 2013. 8. 26.까지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E 주식회사의 학습기 판매업을 계속해 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다. D는 2014. 5. 1. 'J'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소재지를 제1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가, 2018. 9. 30. 서울 동작구 K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으나, A학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의 위 지도점검 이후인 2018. 6. 15.에야 제2부동산을 소재지로 상호 'A학사, 업태 '서비스', 종목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9. 30.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D의 계산과 책임으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고시원 운영 및 학습기 판매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D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만이 작성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제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는 없는 점, ② D는 2017. 3.경부터 9.경까지 원고로부터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2017. 11. 28.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주고받기보다는 월 단위로 정산하는 등으로 그 차액을 수수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는 관련 장부나 정산문서 등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D는 'J'을 공급자로 하여 2017. 10. 20.과 2017. 12. 31. 원고에게 광고대행 및 판매수수료 합계 1억 1,500만 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그 밖에 D와 원고가 'A학사'의 임대료 또는 고시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단위: 원)

과세대상	고지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서울 동작구 B 토지 317㎡, 건물 998.68㎡	2018. 8. 9.	101,069,200	23,357,090	20,213,840	2,650,030
서울 동작구 C 토지 331㎡, 건물 750.33㎡		136,544,000	32,702,280	27,308,800	3,809,57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6

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